

제14장 투명성

제14.1조 공표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국내 법, 규정,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,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.
2. 가능한 한도 내에서, 각 당사국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,
 - 가.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.
그리고
 - 나.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.
3.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국내 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¹에 대하여, 각 당사국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공식 저널²에 그러한 법 및 규정을 공표하고 추가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들의 배포를 장려한다.
4. 제2항가호에 따라 공표되고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제안하는 법안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³안에 대하여, 각 당사국은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제안된 법 및 규정을 공중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전에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.

제14.2조 정보의 제공

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제14.1조에 언급된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,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.

제14.3조 행정절차

¹ 이 항의 목적상, “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” 이란, 한국의 경우, 대통령령,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, 베트남의 경우, 국가주석 명령 및 결정, 정부령, 총리 결정 및 장관 회람을 말한다.

² 이 항의 목적상, “단일의 공식 저널” 이란, 베트남의 경우, 관보를 말한다.

³ 이 항의 목적상, “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” 이란, 한국의 경우, 대통령령,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, 베트남의 경우, 정부령, 총리 결정 및 장관 회람을 말한다.

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국내 법, 규정,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,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.

- 가.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,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,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,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적용 가능한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제공할 것
- 나. 시간, 절차의 성격,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,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, 그리고
- 다. 자국의 절차는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를 것

제14.4조 재심 및 불복청구

1.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,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,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, 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.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, 행정 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,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.

2.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.

- 가.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, 그리고
- 나.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, 또는 국내 법 및 규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

3. 각 당사국은 국내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 재심을 조건으로,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제2항나호에 언급된 모든 결정이 이행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.

제14.5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,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- 가.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,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, 또는
- 나.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